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 융 감 독 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사본수신
제목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안내(2023-20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민원 발생빈도 및 연속성, 피해사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동영상 소비자경보 및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아나운서	카드뉴스
※ AI 아나운서 소비자 경보 동영상 및 카드뉴스는 금융감독원 공식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아나운서 https://youtu.be/SNiLWNRKbs4• 카드뉴스 https://blog.naver.com/fss2009/223192324634		

붙임 1. 소비자경보(2023-20호) 보도자료 1부
2. 소비자경보(2023-20호) 카드뉴스 1부. 끝.



금융감독원장

수신자 조합중앙회 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금융지주, 국내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대부업자, 증권사, 자산운용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담당부서 상품심사판매분석국 금융상품총괄

09/04
오윤경 팀장(S) 전결 09/04
이창

합의자

일상감사

시행 금융상품총괄팀-824 (2023.9.4.) 접수

()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8235 팩스번호 02-3145-8229

/ yungyeong@fss.or.kr

/ 비공개(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풀풀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3.9.1.(금) 조간		배포	2023.8.31.(목)	
담당부서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	책임자 담당자	팀장 선임	현은하 이상혁	(02-3145-8726) (02-3145-8756)
제 목 :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소비자경보 2023-20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치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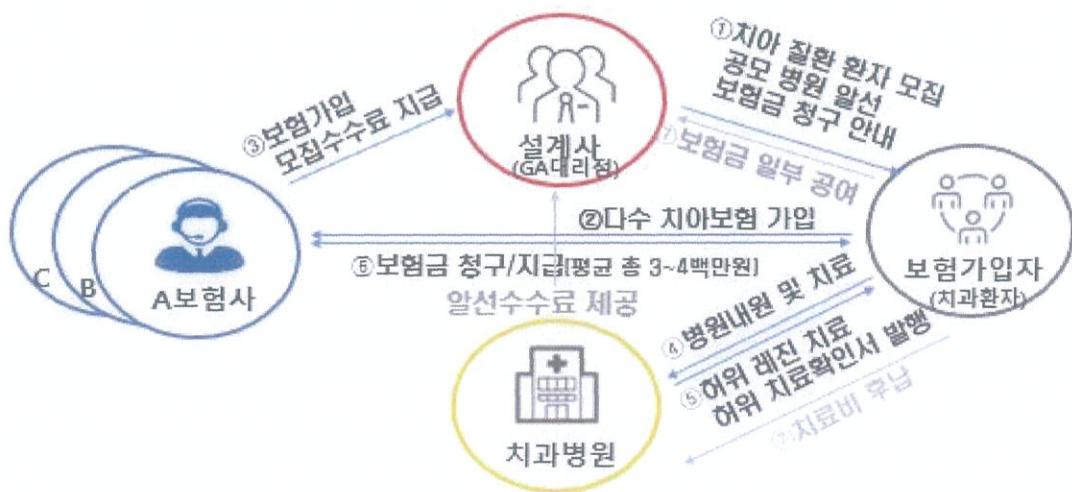
- ① 치아보험 가입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 ②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 ③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④ 허위의 진료기록부는 요구하거나, 작성해서도 안됩니다.

※ 불임 : 치아보험 관련 주요 용어 참조

I.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임플란트, 레진 등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 * '22년중 65세이상 환자의 8.7%(805천명)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며 이는 최근 5년(18~'22년) 연평균 8.6%가 증가한 것으로 '18년 대비 38.9%가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3.7.20)
-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도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도 늘어나는 추세*
- * 충치치료로 9억 꿀꺽...병원·설계사·환자 짠 '신종 보험사기'('22.11월)
보험사기범된 '치위생사들'...가짜 진단서로 수 억원 꿀꺽('23.6월)
- 최근에는 설계사(GA 대리점)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 보험사기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사례 (☞ 유의사항 ①)]



[특정설계사(GA대리점) ↔ 치과병원 ↔ 보험가입자(고객)]

(환자 유치) 특정 설계사들이 SNS, 전화 등으로 ①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하여 ② 다수(3~4개)의 치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③ 보험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수취

* 공모 병원에서 충치 상태를 진료기록 없이 사전 진단하거나 건강검진시 시행한 치아점검 결과를 활용

(보험금 편취) 감액기간(1년내 50%) 1년 경과 후 ④ 공모한 치과병원에 환자가 내원하여 치료 받고 ⑤ 레진 등 충전치료 개수를 부풀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⑥ 보험사에 청구하여 수취한 보험금 일부를 ⑦ 설계사가 병원 치료비 후납과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

⇒ 치아보험 관련 보험사기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II. 보험사기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1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

[사례 ①-1 보험설계사가 치과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유도]

- 보험회사 소속 모집조직은 치과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A씨(○○치과), B씨(◇◇치과)**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여 내원 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공모
 - 보험설계사 겸 상담실장 A, B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하는 등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 면책기간(90일) 경과 후 충치 치료를 받게 하여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
- ⇒ **모집조직 벌금**(100~300만원), **보험설계사 A씨 및 B씨 벌금**(각 100만원)

[사례 ①-2 치료치아 개수를 허위로 부풀려 보험금 청구]

- 특정 설계사(GA대리점)가 ○○치과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SNS나 전화로 “치아보험 여러개 가입 후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 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치아보험 가입환자를 모집
 - 환자들로 하여금 ○○치과에 내방하여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9.7억원을 편취하게 함
- ⇒ **치과 관계자 2명, 설계사 6명, 환자 28명** 검찰 송치

☞ (유의사항) 보험가입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2 시행하지도 않은 수술보험금 허위 청구

[사례 ② 허위의 치조골 이식술 청구]

- 환자 C씨는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함**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치과로부터 발급 받아 12회에 걸쳐 수술보험금 1,200만원을 수령
- 치과 관계자 2명(원장, 상담실장)은 환자 C씨 등 27명의 환자에게 상기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102회에 걸쳐 1억 1,359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
⇒ 원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담실장 및 환자 C씨 벌금(400~500만원)

☞ (유의사항)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3 수술일자를 나누어 보험금 과다 청구

[사례 ③ 동일 날짜 치조골 이식술을 쪼개어 과다청구]

- 환자 D씨 등 4명은 특정일에 2개 이상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음에도 **여러 날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를 ○○치과로부터 발급받아 11회에 걸쳐 수술보험금 2,100만원을 수령
- 치과 관계자(원장, 상담실장)는 상기 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발급하여 환자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
⇒ 환자 D씨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환자 3명 벌금(200~300만원)
원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담실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유의사항)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례 ④ 진료 날짜를 보험가입 이후로 변경]

- 환자 E씨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치과 사무장 F씨에게 진료기록부 **진료 날짜를 보장개시일 이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 사무장 F씨는 7회에 거쳐 진료 날짜를 수정*하고 허위의 진료 기록부를 발급하여 환자 E씨의 보험금 1,002만원 편취(미수)를 방조
 - * 실제 진료 날짜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보험가입일로부터 90일 이후의 날짜로 수정
- ⇒ 환자 E씨 및 사무장 F씨 벌금(200~300만원)

☞ (유의사항) 허위의 진료기록부는 요구하거나 작성해서도 안됩니다.

III. 소비자 당부사항

- 레진,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일 경우 간편한 지급심사로 지급이 이루어져
 -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기 쉬우나,
 -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되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한편,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보험사기 신고방법]

- ▶ (유선 상담·신고) ☎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

[보험사기 제보 요령]

- ▶ 혐의자(업체)를 특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증거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 단순히 혐의자의 이름, 혐의업체의 상호만을 제보하시는 경우에는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는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AI 아나운서	카드뉴스
※ AI 아나운서 소비자 경보 동영상 및 카드뉴스는 금융감독원 공식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아나운서 https://youtu.be/SNiLWNRKbs4• 카드뉴스 https://blog.naver.com/fss2009/223192324634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http://www.fss.or.kr))

- ① 치아 : 보장 대상이 되는 치아는 유치 및 영구치를 말함
- ② 충전치료 :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 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
- 충전재 :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레진 등
- ③ 크라운치료 :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
- ④ 임플란트 :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
- ⑤ 치조골 이식술 :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
- 감염 우려 등으로 통상 인접 부위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같은 날 여러개 치아에 대해 이식술을 하더라도 1회에 해당하는 수술보험금만 지급

주요 치과치료 비교

구 분	발거여부	치료 방법
충 전	발거하지 않음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로 원상 회복
크라운	발거하지 않음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
임플란트	발거함	구강 조직에 성형재료 매식 후 보철물 삽입